
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(이만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3468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3. 7. 26.

발 의 자 : 이만희 · 이명수 · 박덕흠
조명희 · 김희곤 · 배준영
박성민 · 이인선 · 정우택
허은아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고, 국문, 영문, 모바일 등의 종류로 구분하여 신청·발급받을 수 있음.

국민 대다수가 본인을 확인하고 신분을 증명하는 중요 수단 중의 하나로 운전면허증을 사용하고 있고, 모바일운전면허증 등과 같이 신분증 수단이 다양화되면서 사용범위와 근거 등 사용자의 혼선이 가중되고 있어, 확인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이를 명확하고 편리하게 제시·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.

또한, 운전면허 관련 사항을 보다 편리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시·도 경찰청장이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하여 운전면허 관련 사항을 확인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, 이 법령을 근거로 발행된 운전면허증, 모바일운전면허증 등을 위조·변조하거나, 위조·변조된

운전면허증을 행사하거나, 부정행사하는 경우에도 형법상 공문서로 의 제함으로써 모바일상의 운전면허 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사회적 신용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(안 제85조의2 및 제148조의3 신설).
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5조의2(운전면허증의 확인 등) ①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단체, 사회단체, 기업체 등에서 운전면허소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성명·사진·주소·면허번호 및 발급 관련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증빙서류를 붙이지 아니하고 운전면허증으로 확인하여야 한다. 다만, 신분의 확인 방법 등을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민원서류나 그 밖의 서류를 접수할 때
2. 특정인에게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할 때
3. 그 밖에 신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

② 시·도경찰청장은 제85조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모바일운전면허증(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32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운전면허증을 말한다. 이하 “모바일운전면허증”이라 한다)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발급할 수 있다.

③ 모바일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확인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확인

사항과 동일하게 확인한 것으로 본다. 다만, 신분의 확인 방법 등을 다른 법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④ 시·도경찰청장은 경찰청에 연계된 운전면허정보를 이용하여 운전면허확인서비스(제2항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통하여 성명·사진·주소·운전면허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를 제공할 수 있다.

⑤ 운전면허확인서비스를 이용하여 확인하는 경우 성명·사진·면허번호를 확인한 것으로 본다.

⑥ 모바일운전면허증 및 운전면허확인서비스의 발급 및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

제14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48조의3(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문서 의제) 「형법」 제225조, 제229조, 제230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 법의 운전면허증(제85조의2제2항에 따른 모바일운전면허증을 포함한다)은 이를 공문서로 본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85조의2(운전면허증의 확인 등) ①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단체, 사회단체, 기업체 등에서 운전면허소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성명·사진·주소·면허번호 및 발급 관련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증빙서류를 붙이지 아니하고 운전면허증으로 확인하여야 한다. 다만, 신분의 확인 방법 등을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u> <u>1. 민원서류나 그 밖의 서류를 접수할 때</u> <u>2. 특정인에게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할 때</u> <u>3. 그 밖에 신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</u> <u>② 시·도경찰청장은 제85조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모바일운전면허증(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32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이동통신</u>

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
설치된 운전면허증을 말한다.
이하 “모바일운전면허증”이라
한다)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
발급할 수 있다.

③ 모바일운전면허증을 이용하
여 확인하는 경우 제1항에 따
른 확인 사항과 동일하게 확인
한 것으로 본다. 다만, 신분의
확인 방법 등을 다른 법에서
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
하다.

④ 시·도경찰청장은 경찰청에
연계된 운전면허정보를 이용하
여 운전면허확인서비스(제2항
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를
통하여 성명·사진·주소·운
전면허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
서비스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를
제공할 수 있다.

⑤ 운전면허확인서비스를 이용
하여 확인하는 경우 성명·사
진·면허번호를 확인한 것으로
본다.

⑥ 모바일운전면허증 및 운전
면허확인서비스의 발급 및 신

<u><신 설></u>	<u>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</u> <u>제148조의3(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문서 의제) 「형법」 제225조, 제229조, 제230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 법의 운전면허증(제85조의2 제2항에 따른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포함한다)은 이를 공문서로 본다.</u>
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